

2026학년도 2학기 휴학/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휴학

- ▶ 휴학생은 수료/졸업이 불가합니다.
- ▶ 군 입대 예정 사유로 일반휴학을 먼저 승인받은 학생도, 실제 입대 시에는 입대일 1주 전까지 입대휴학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입대휴학을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휴학 기간 만료에 따라 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▶ 입대휴학일은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휴학처리되며, 입대일자가 종강일 이후인 재학생이 재학중입대휴학을 학기 중 신청하는 경우 성적인정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차기유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
가. (등록 전) 일반휴학 / 일반휴학연장

- 신청기간: **2026. 7. 27.(월) ~ 9. 4.(금)**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*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.
- *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- * 연체 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(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)
- *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(최초에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, 1개 학기 경과 후 복학도 가능)
- * **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 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.**
- *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: 학사과정 6개 학기(단 약학대학(2022학번 신입생부터~) 및 의과대학 8개 학기), 석사/박사과정 3개 학기(특수원 및 법전원 석사과정 4개 학기), 석박통합과정 6개 학기까지 가능

나. (등록 후) 학기 중 일반휴학

- 신청기간: 학기 개시(등록금 납부) 후 ~ **2026. 11. 21.(토)**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* 단,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,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(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).
- * 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됩니다(아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참고).
- *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,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.

(성균관대학교 학칙 별표9-2) 등록금의 반환기준

반환사유발생일	반환금액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(입학생, 재학생)	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	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/2 해당액

※ 대학원 집중과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따로 정함.

※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학교로 반환해야 함.

<장학생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변경(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)>

[변경 전]: (등록금 - 장학금) × 환불비율

[변경 후]: (등록금 × 환불비율) - 장학금 ⇒ **환불금액이 음수일 경우, 학생이 학교로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하며, 반환완료 후 일반휴학 신청가능**

※ 단, 분할납부자는 '(등록금 × 환불비율) - 장학금 - 분할납부미납금'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며, 환불금액이 음수일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일반휴학 신청가능

다. 입대휴학(일반휴학 중인 학생도 입대 시 입대휴학을 별도 신청해야 함)

- 신청기간: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(**단 2026. 7. 20. 이후 입대자는 7. 20. 이후 신청 가능**)
- 입대휴학일은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함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* 입대하는 학생은 **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을 신청해야 하며, 이 때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**
- *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- * 수업일수 3/4선 경과 이후인 11.22.(일)부터 종강일인 12.18.(금) 사이에 입대하여 재학중입대휴학을 하고,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차기유료복학 대상에 해당합니다.

***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,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**

-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고하고 증빙서류(귀가증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시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귀향 혹은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, 입대휴학이 무효처리되며, 이전 학적변동 상태로 환원되므로, 재학중입대휴학자의 경우 즉각 학업에 복귀해야 합니다.
- 입대휴학자는 전역 후에는 입대휴학만료제적 예시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복학/휴학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임신.출산.육아휴학 / 임신.출산.육아휴학연장

- 신청기간: **2026. 7. 27.(월) ~ 2026. 11. 21.(토)**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제출서류: 진단서(임신/출산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육아)
- *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(자녀의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)가 있는 부모
- *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.
- * 임신.출산.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- *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.출산.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
마. 창업휴학 / 창업휴학연장

- 창업휴학 신청기간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

2. 복학(일반복학, 엇학기복학, 제대복학)

▶복학 승인은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을 사전에 승인하는 절차입니다. 승인되더라도 즉시 재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며, 학적 상태는 2026학년도 2학기 개시일(2026.9.1.)부터 재학으로 적용됩니다.

- 신청기간: **2026. 7. 20.(월) ~ 2026. 7. 31.(금)**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*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을 신청(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)해야 합니다.
- ※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됨**
- *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.
- * **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 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.**
- * **휴학생은 복학 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(승인 전 “신청” 단계에서도 수강신청 가능)**
- *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- * 제대복학자는 복학 신청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명시)을 GLS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(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뒤 실제 전역 후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> 휴/복학 신청상태조회 메뉴에서 전역증으로 교체하여 업로드 필요)

구분	제출서류
전역자	전역증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명시)
수업일수 1/4 이내 전역예정자 (9.27(일) 까지 전역)	전역예정증명서
수업일수 2/4 이내 전역예정자 (9.28(월) ~ 10.24(토) 전역)	전역예정증명서, 휴가증 (휴가증을 통해 3/4 이상 수업 참석이 가능함을 증빙해야 하며, 제출이 불가한 경우, 부대장 확인서(불임 양식)로 대체가능)

* **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수업일수의 2/4선(10.24(토)) 경과 후에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제대복학 신청이 불가합니다**

<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복학 신청 관련 유의사항>

- [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전]인 경우: 복학 가능(연가 사용할 필요 없음)
- [소집해제일이 개강일 이후]인 경우: 복학 시점부터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
- ※ 복학이 불가한 경우
 - 1) 소집해제일까지 남은 연가일수 부족, 2) 병가·대체휴무·특별휴가·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
 - 3) 강의 출석과 복무기간 출근의 병행, 4) 야간근무자가 연가 사용 없이, 주간 휴게시간에 강의 출석

* **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 휴학연장(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)하지 않을 시, “입대휴학만료제적” 처리됩니다.**

<입대휴학만료제적 예시>

- ※ 2025년 9월 1일 ~ 2026년 2월 28일 제대: 2026년 2학기 개시일 이전 복학/휴학연장 신청 필수
- ※ 2026년 3월 1일 ~ 2026년 8월 30일 제대: 2027년 1학기 개시일 이전 복학/휴학연장 신청 필수
- ※ 2026년 8월 31일 ~ 2027년 2월 28일 제대: 2027년 2학기 개시일 이전 복학/휴학연장 신청 필수

3. 재입학

- 신청자격: 제적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

※ 단,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(수료)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의 학사경고제적자는 예외

- 신청기간: 2026. 7. 20.(월) ~ 2026. 7. 24.(금) 17:00까지
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재입학신청

*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, 학기를 맞추어 재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(단, 유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기 재입학 가능)

* **재입학 승인 여부는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**, 수강신청 전까지 개별 안내됩니다.

*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(단,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예외)

*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.